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체불 해결 못하고 위헌 소지”

중합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에 대해 14일 탄원서를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는 대금체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독과단 없이 실패한'가독한 제도'라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이란 내용의 탄원서를 공정위의 국회에 제출하고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하도급 직불제 확대가 5가지 면에서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만 가득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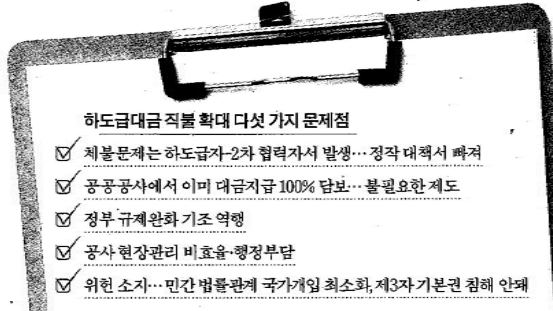
첫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와 장의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 2차 협력자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

건협, 하도급자 대책 부제 규제 완화 기조 정면 배치 등 5가지 문제점 담은 탄원서 공정거래위원회·국회에 전달

정대 있는 장비대금지급보증제 활성화와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납금액의 87%가 하도급자가 체불한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장비대금 직불과 근로자임금 직불을 위한 근거규정이 간산법과 근로기준법에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만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다섯 가지 문제점**
- ☑ 체불문제는 하도급자 2차 협력자 발생...정작 대책서 빠져
 - ☑ 공공공사에서 이미 대금지급 100% 담보...불필요한 제도
 - ☑ 정부 규제완화 기조 역행
 - ☑ 공사 현장관리 비효율·행정부담
 - ☑ 위헌 소지...민간 법률관계 국가개입 최소화, 제3자 기본권 침해 안돼

둘째,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 확대는 필요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직불 확대는 체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자-근로자-장비업자 사이의 해결방안이 아닐 뿐더러, 문제가 없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작용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셋째,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업체까지 직불을 확대한 것으로, 쓸모없는 규제가 만들어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넷째, 공사 현장관리 비효율과 행정부담으로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원도급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불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가 완비돼 있는 공공시장에서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3년 5월 선고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따르면, “국민 사치의 결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히 제3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성준기자 newspia@

아하! 그렇구나

공사계약이 중도해지됐을 때 선급금 정산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관계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계약이 중도해지됐을 때 선급금과 기성대금의 상계정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의 선후관계가 간혹 두터어진다.

예를 들면, A회사는 B회사에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 1억원을 지급하고, B회사는 C회사에 그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고 선급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A, B, C회사는 하도급대금을 A회사가 C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 B회사의 부도로 A회사와 B회사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계약이 해지됐을 때 B회사의 기성금액은 1억5000만원, 그중 C회사의 기성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선급금반환청구를 하였다.

A회사의 주장은, C회사의 기성금액에서 C회사가 받은 선급금을 공제한 9000만원은 A회사가 C회사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액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액을 제외한 6000만원(1억5000만-9000만)원뿐이고, 선급금 1억원에서 기성금액 6000만원이 상계된 나머지 4000만 원을 B회사가 A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이는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한편,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의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규정은 선급금과 기성금액의 상계정산 이후에 남는 공사금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 다40109 판결). 이와 달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정산에 우선하게 되면,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수급인으로부터는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법을 부담하는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 선급금 1억원은 B회사의 기성금액 1억 5000만원과 상계된 B회사의 선급금반환의무는 없고, 남은 기성대금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A회사는 C회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있다.

이음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막내린 총선... 강원도 건설업계, 당선자에 기대감 높아

국비예산 절반넘게 'SOC' 집중

주요 공약 '동서고속철도' 20대 국회서 결론나지 관심
설악산 케이블카·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도 주목

20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강원지역 당선자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 국비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집중돼 있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에 배정된 국비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SOC 예산이다. 2015년 강원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 6조715억원 가운데 SOC 예산은 절반가량인 3조1720억원이고, 올해 국비 예산 6조5028억원 가운데 SOC 예산은 3조2843억원에 달했다.

전체 예산 중 SOC 예산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예산철마다 도내 주요 건설관련 예

산 확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국회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내년에도 6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 SOC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강릉 횡도와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원주~제천)전철 등 철도를 비롯해 동해항 3단계 개발과 삼척~제천간 동서고속도로 등 철도와 횡단, 도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확보도 시급하다. 경기장 등의 건설은 마비지에 접어들었지만 경기장 진입도로와 기존 도로 개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아울러 강원지역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도도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동서고속철은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차례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당이 동서고속철도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총선 이후로 미뤄진 예비타당조사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주민 반대가 거센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도 이번 20대 국회가 어떻게 풀지 건설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원도는 전체 예산에서 SOC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대적”이라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전인도로 건설 등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기기자 haesook@